

# 고려 광종·경종대 정치세력과 정국 운영에 관한 연구

김원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선전기사 전공

kwh7179@snu.ac.kr

---

## I. 머리말

II. 광종 즉위 전후 정치세력의 동향과 신구 갈등의 실상

III. 광종 후반기 정국 동향과 경종대 개편

---

## IV. 맷음말

## I. 머리말

---

고려 태조 왕건은 여러 지방 세력의 도움에 힘입어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그러한 지방 세력 중 일부가 고려 초기 중앙관료군을 구성했다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제도 정비가 일단락되는 성종대 이전 까지 중앙 정치세력은 일련의 정치적 사건과 조정의 지향에 따라 부침을 겪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태조 사후 혜종·광종대 형제들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 과정에서 여러 호족이 득세하기도 하고 실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광종·경종대는 새로운 세력의 중앙관료화 과정에서 신구 관료의 권력 투쟁이 이어지면서 정치세력의 변동이 잦았던 시기로 꼽힌다. 그러나 광종·경종대는 동시에 광종대 과거제와 경종대 전시과의 시행으로, 고려 관료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광종·경종대 정치세력에 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광종대 정국 운영과 정치세력에 관해서는 광종의 호족 세력 제어와 왕권 강화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sup>1</sup> 광종대 중앙관료 사회에 등장했던 신진 세력에 대한 연구,<sup>2</sup> 광종의 지지 세력에 대한 연구<sup>3</sup>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반면 경종대 정치세력에 대한 연구는 그 짧은 재위로 말미암아 대단히 소략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경종대 전체적인 정치세력의 동향을 살핀 연

- 
- 1 김두진, 「高麗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한국학보』 15(1979); 유병기, 「高麗初豪族의 動向과 王權強化策」, 『전주사학』 1(1984); 하현강, 『韓國中世史研究』(서울: 일조각, 1988).
  - 2 이기백, 「新羅統一期 및 高麗初期의 儒教의 政治理念」, 『대동문화연구』 6·7(1969); 강희웅, 「高麗初科舉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한국연구실(편), 『韓國의 傳統과 變遷』(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오성, 「高麗光宗代의 科舉入格者」, 이기백(편), 『高麗光宗研究』(서울: 일조각, 1981); 김당택,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 田柴科」, 이기백, 위의 책; 전기웅, 「高麗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譏貳」, 『부대사학』 9(1985b); 백남혁, 「高麗光宗代 改革政治의 基盤과 成果」, 『실학사상연구』 23(2002).
  - 3 윤성재, 「高麗光宗의 政治基盤」, 『한국사학보』 13(2002).

구,<sup>4</sup> 전시과로 대표되는 개혁 추진 세력에 관한 연구<sup>5</sup>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과거제의 도입과 여러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여러 영역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이 시기 정치의 상과 성격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호족 출신 공신 세력과 광종대 중앙관료로 진출한 신진 세력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파악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광종대 신진 세력이 광종의 왕권 강화와 전제왕권 확립을 위해 근시적에 임명되어 적극적으로 왕권에 영합했던 세력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광종대 대규모로 숙청되었다고 여겨지는 구신 세력의 대립향으로서 신진 세력을 설정했다. 그 결과 경종 재위 초, 소위 ‘후생참적(後生讒賊)’에 대한 복수도 이러한 신진 세력 일반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자, 구신 세력과 신진 세력 간 권력 투쟁의 결과로 파악하게 된다. 또한 광종·경종대 평범한 기록에 대해서도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당대 중앙관료군을 구신 세력과 신진 세력의 대립, 그리고 광종의 개혁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반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신구 세력들 중에서도 광종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숙청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반대로 광종의 근신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폐출당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기에 여러 사례를 당대 정치 구조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4 이기백, 「高麗 成宗代의 政治的 支配勢力: 慶州·羅州 地方 출신의 儒學者들과 近畿 地方 출신의 豪族系 官僚들」, 『호남문화연구』 6(1974);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서울: 일지사, 2005).

5 전기웅, 「高麗 景宗代 政治構造와 始定田柴科의 성립기반」, 『진단학보』 59(1985a); 노용필, 「高麗 景宗初 改革政治와 그 推進勢力」, 『진단학보』 91(2001).

최근에는 광종대 과거제를 통해 새롭게 등용된 인물들과 관련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광종대 신진 세력 등용에 대해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과거제를 통해 문사를 등용했다는 플라센 라헬의 연구,<sup>6</sup> 위민정치(爲民政治)의 구현에 합당한 학문적 소양을 갖춘 문사들의 등용 목적에 따라 과거제가 채택되어 새로운 문사들이 중앙관료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하는 김우택의 연구가 이어졌다.<sup>7</sup>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광종대 과거 시행과 급제자 등용이 단순히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연구들은 정치세력을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신구 갈등의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측면에서 당대 관료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종·경종대의 정국의 동향과 정치세력을 관료의 구조와 당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광종 즉위 당시의 정치 구조에 대해 국초의 삼한공신 책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후 광종대와 경종대 정국 운영과 정치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광종·경종대의 연대기 사료가 대단히 소략하기 때문에 추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그 소략한 기록마저도 성종대 최승로의 과거 인식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최승로의 회상은 당대인의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다른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태조대부터 활약하던 최승로라는 구신 관료의 관점이 녹아 있다. 따라서 최승로의 인식을 활용하되 다른 사료를 비교 검토하며 당대 정치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6 플라센 라헬, 「10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과거제도의 시행」, 『한국사론』 67(2021).

7 김우택, 「10~12세기 高麗 選舉制의 운영 원리와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

## II. 광종 즉위 전후 정치세력의 동향과 신구 갈등의 실상

### 1. 삼한공신 책봉과 고려 초 중앙관료 구조

광종대 정치세력과 정국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고려 초 정치세력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정치적 기반에서 광종대 정치가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고려 태조는 지방의 여러 호족 세력을 규합하여 고려를 건국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국초의 과제였는데, 각 지역의 독자성이 강했던 호족들을 규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결과 왕규의 난과 같은 호족 출신 세력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정종은 패강진, 서경 세력과 같은 지방 세력의 힘을 이용해 난을 진압하면서 왕위에 오르기도 했다.<sup>8</sup>

건국 이후 고려 조정에서는 국가 제도로 이러한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며 일원화된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 조정에 협력하여 중앙관료로 활약했던 세력이 있던 반면, 지방에 머물던 호족들은 행정, 징세, 사법 등의 방면에서 여전히 지방 사회의 유력자로 활약했다.<sup>9</sup>

태조는 고려 건국에 공훈을 세운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공신 책봉을 실시한다. 우선 건국 직후인 재위 원년(918)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공신 책봉을 단행하여 1등 공신 4명과 2등 공신 7명 그리고 3등 공신으로

8 김갑동,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왕권의 확립과정과 호족」, 『한국사 12』(서울: 탐구당, 2003), 92~99쪽 참조.

9 김갑동,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282~285쪽 참조.

2,000여 명을 책봉했다.<sup>10</sup> 이들을 삼한공신으로 칭했으며 건국에 직접적으로 공훈이 있거나 고려 왕실과 뜻을 같이했던 귀순 호족들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태조 23년(940)에는 신흥사(新興寺)에 공신당을 설치하고 동·서벽에 공신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다시 한번 공신들을 기린다.<sup>12</sup> 이후 문종은 태조대 공신 세력을 추증했는데 이때 추증받은 인원은 총 3,200명이었다.<sup>13</sup>

이처럼 태조대 공신 집단의 범위는 상당히 넓었고 그러한 삼한공신의 규모는 고려 토성(土姓)의 수로 미루어본다면 사실상 나말여초 호족 세력의 대부분을 포괄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4</sup> 각종 묘지명의 국초 삼한공신에 제수되었다고 나오는 인물들의 행적을 『고려사』, 『고려사절요』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광범한 지방 세력들이 삼한공신에 포함되었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고려 건국에 가장 큰 공훈을 세운 대부분의 1등, 2등 공신들은 중앙관리로 임명되지 않았으며,<sup>15</sup> 후손들도 중앙에서 관료로 활약하지 않았던

10 『高麗史』世家 太祖 원년 8월(916) 辛亥.

11 김광수,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사학지』 7(1973) 36~39쪽, 48쪽 참조.

12 김광수는 태조 23년(940)의 공신당 설치로 삼한벽상공신과 일반 삼한공신의 위치가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위의 논문, 38~39쪽). 그런데 삼한벽상공신을 삼한공신으로 통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후 삼한공신의 범위 설정에 관해 이견이 있다. 삼한벽상공신이 태조대의 광범한 삼한공신과 동일한 칭호라고 보는 박천식, 「三韓壁上功臣의 研究 I (壁上功臣의 形成과 太祖政權의 一斷面)」, 『전라문화논총』 2(1988), 169~171쪽의 견해, 그리고 공신당에 모든 삼한공신이 壁像되지 못하여 공훈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周藤吉之, 「高麗初期の功臣、特に三韓功臣の創設: 唐末・五代・宋初の功臣との関連において」, 『東洋學報』 66-1~4(1985), 376~377쪽; 음선혁, 「高麗太祖王建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153~154쪽; 강형석, 「고려 전기 공신당의 설치와 운영: 벽상공신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67(2021), 155~157쪽 등의 견해가 있다.

13 『高麗史』世家 文宗 8년(1054) 12월 庚寅.

14 박은경, 『高麗時代鄉村社會研究』(서울: 일조각, 1996), 94~95쪽; 김일우, 『고려 초기 국가의 地方支配體系 연구』(서울: 일지사, 1998), 171~172쪽 참조.

15 음선혁, 앞의 논문(1995), 170쪽 참조.

것 같다. 그들 스스로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을 수도 있고 중앙에서 세를 잃어 갔던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앙관료로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2등 공신 책봉자 대부분이 성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후 이들에게 사성을 실시했을 것이고 개명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유력한 관료의 전기류 기록에서 1, 2등 공신의 후손이라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이들은 지방으로 돌아가 유력자로 머물렀던 것 같다.

태조 원년의 1, 2등 공신 외에 태조의 묘실에 체협된 공신으로 유금필(庾黔弼)과 최옹(崔凝)이 있으며, 이들은 고려 초 중앙관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왕건의 심복이었기에 태조 원년 책봉된 삼한공신에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2,000명의 3등 공신 중 하나였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초기 중앙관료군은 건국기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복잡다단한 형태를 보였을 것이다.<sup>16</sup> 예를 들어, 박수경(朴守卿)과 같이 태조대 상당한 군공을 세워 역분전(役分田)을 지급받을 때 특별히 200결(結)을 더 내려받을 만큼 공훈이 지대한 인물도 있었고,<sup>17</sup> 궁예 정권에 벼슬하고 고려 조정에서도 활약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왕유(王儒) 같은 존재들도 있었다.<sup>18</sup> 또한 12세에 왕건에게 신동으로 소개되었던 경주 출신 최승로 가문도 있었는데, 어린 최승로가 왕건에게 소개되었던 것도 부친 최은함(崔殷誠)이 이미 신라(新羅) 원보(元甫)로서 경순왕을 따라 왕건에게 귀부하여 관료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sup>19</sup> 이

16 고려 초 중앙 관료군에 대해서는 김갑동, 「高麗太祖 初期의 中央官府와 支配勢力: 太祖 元年 6月 辛酉 詔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학회(편), 『고려 중앙정치제도사의 신연구』(서울: 혜안, 2009) 참고.

17 박수경은 연대기 자료에서 삼한공신으로 책봉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후손의 묘지명에는 삼한공신을 칭하는데, 역분전을 지급받았던 점과 국초의 전공을 생각하면 당연히 공신에 책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경산 묘지명」; 「박소 묘지명」 김용선(편),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2021).

18 『高麗史』列傳5 王儒.

19 『三國遺事』塔像4 三所觀音 衆生寺; 『高麗史』列傳6 崔承老.

들은 공적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고려 초 왕건 정권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범 삼한공신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외(京外)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공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삼한공신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국초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삼한공신 세력 내부에서도 고려 건국에 큰 공훈을 세운 세력은 왕실과 중첩 혼인을 통해 권력 세력으로 성장하여 서로 상쟁하면서 중앙관료 사회에서의 권력이 축소되어 갔던 것 같다.

또한 일찍이 혜종·정종·광종께서 서로 왕위를 계승한 초기를 살펴보면 모든 일이 안정되지 못한 때로 양경(兩京)의 문무 관리 중 절반이 살상되었습니다.<sup>20</sup>

이 인용문은 최승로가 회상한 혜종~광종대 왕위 계승 과정의 모습으로, 국초 중앙관료들이 처한 상황을 잘 말해 준다. 국초 호족 출신 관료들은 강한 권력을 소유했고 왕위 계승을 두고 특정 세력으로 결집하며 왕권을 위협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권력 투쟁 과정에서 중앙관료군 내부에서 상호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 결과 개경과 서경의 문무 관료의 절반이 살상되었다고 표현될 만큼 많은 중앙관료가 희생되었다. 광종의 즉위 과정과 즉위 초의 정국 운영 상황은 기록이 대단히 소략하여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희생의 결과 광종 즉위 초의 정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최승로는 정종대 내란의 징을 미리 알고 제거했기에 광종으로 왕위가 순조롭게 넘어갔고 광종 즉위부터 8년간을 3대와 견주며 태평성대로 이어졌다고

---

20 『高麗史』列傳6 崔承老, “又曾見惠定光三宗相繼之初百事未寧之際兩京文武半已殺傷”.

평가했다.<sup>21</sup> 이는 왕규의 난이 진압된 이후 별다른 권력 투쟁적 사건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초에 활약하던 유력한 공신이자 고위 관료들의 세대교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918년 고려 건국 당시 활약했던 인물들의 생몰년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광종 즉위 시에는 약 30년이라는 한 세대 이상의 시기가 지나고 있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태조에게 발탁된 최지몽(崔知夢)·최승로(崔承老) 같은 인물들은 여전히 중앙관료로 활약했지만, 배현경(裴玄慶)·공직(龔直)·유금필(庾黔弼)·최언위(崔彦撫)·박술희(朴述熙)·왕식렴(王式廉) 등은 광종 즉위 이전에 모두 사망했다. 특히 왕식렴의 사망은 선왕인 정종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광종 집권 초기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공신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광종은 정종의 동복형제로서 왕식렴 세력이 광종 왕권을 보위해 줄 수도 있었지만, 왕식렴 세력과 광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광종의 행보에 간섭하거나 저항 세력으로서의 존재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 덕분에 광종은 새로운 제도 마련과 기존 제도의 개혁을 한층 수월하게 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 2. 광종대 전반기 신구 갈등의 실상

이처럼 광종이 즉위할 무렵에는 다소 안정된 상태가 된 듯한데, 이러한 광종대의 관료 지형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을 분석하고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전하는 광종대 기록이

---

21 『高麗史』列傳6 崔承老, “又曾見惠定光三宗相繼之初百事未寧之際兩京文武半已殺傷”.

다른 왕대에 비해 소략한 편이고 태봉의 관제가 유지된 탓에 관료 체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몇몇 고관과 정치적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광종 즉위 초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광(大匡) 박수경이 관료들의 수장으로 있었고, 광평시랑(廣評侍郎) 서봉(徐逢)과 순질(荀質) 등 고관들의 존재도 확인된다. 박수경은 태조의 통일 당시 군공뿐만 아니라 정종대 내란 평정에 공이 매우 많았다고 기록되었으며, 광종 즉위 직후 그에게 국초 공로자를 상고하여 올리도록 했던 만큼 당시 노성한 대신으로서 광종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서봉과 순질의 가계와 관료 진출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박수경과 함께 광종 초년에 고관의 위차였다는 점에서 광종 정권을 지지하던 구신관료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상(大相) 왕융(王融), 좌승(佐丞) 왕궁(王兢)과 같이 사신으로 후주에 파견된 인물들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광종 6년(955), 광종 10년(959)에 후주로 파견되어 토산물을 조공했다.<sup>23</sup> 고려시대 연대기 자료에는 그들에 관한 별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중국 측 자료에서는 그들을 고려의 왕자(王子)로 표현한 기록이 확인된다.<sup>24</sup> 그러나 당시 왕씨 성을 받은 인물들이 사신으로 갔을 때도 역시 왕자라는 칭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종실 세력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sup>25</sup> 다만 광종 즉위 후 후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광평시랑(廣評侍郎)이나 대상(大相), 좌승(佐丞) 같은 고관들을 파견하여 사신단의 격을 높였을 것이고 자연스레 사성받을 만큼 유력한 공신 가문 출신 인물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22 『高麗史』世家 光宗 즉위년(949) 8월.

23 『高麗史』世家 光宗 6년(955); 10년(959).

24 『冊府元龜』外臣部 朝貢第四.

25 강희옹, 앞의 논문(1973), 272쪽 참조.

이중 왕융은 광종대 한림학사직을 역임하며 여러 차례 지공거로서 과거를 주관하며 과거제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에 관해서는 중국 남방에서 수학하면서 문사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26</sup> 중국 문화에 익숙하고 문장에 능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당대에도 문한 능력으로 등용된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되었던 만큼,<sup>27</sup> 문장 능력을 인정받아 광종대 현달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광종 7년(956)에는 쌍기가 고려로 귀화하여 같은 해 원보(元甫) 한림학사(翰林學士)직을 제수받는다.<sup>28</sup> 이후 그는 과거제를 건의하여 처음 3차례 지공거를 맡으며 과거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광종 초기 정국에서 인재 충원에 힘썼다.<sup>29</sup> 쌍기와 그가 선발했던 초기 과거 입격자들이 새롭게 관료가 되었고, 이들은 광종과 밀착하여 기존 구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광종대 과거 입격자는 39명으로 전체 재위 기간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었으며 광종의 개혁 정치에 직접 참여했다는 기록도 등장하지 않는다.<sup>30</sup> 즉, 일파를 이루어 그러한 권력을 재창출할 만

26 경종대 진관선사비문 작성을 두고, 최승로는 왕융에게 사양하면서 그가 중국 복건성의 閩川에서 유학했음을 말했다. 허홍식(편),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82쪽; 이기동, 「羅末麗初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中世的 側近政治의 志向」, 『역사학보』 77(1978), 57쪽에서 재인용.

27 崔滋, 『補闕集』序, “光宗顯德五年 始闢春闉 擧賢良文學之士 玄鶴來儀. 時則王融·趙翼·徐熙·金策 才之雄者也”.

28 『高麗史』世家 光宗 7년(956); 『高麗史』列傳6 雙冀.

29 광종대 과거는 총 8회 시행되었다. 지공거로 雙冀가 3회, 趙翌이 1회, 王融이 4회를 역임했다. 이들 중 조의의 행적은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광종대 文名으로 등용되었다는 기록이 전하며(崔滋, 『補闕集』序), 조선 중기 학자인 月川 趙穆의 신도비에 횡성조씨 가문의 선계에서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趙穆, 『月川集』附錄, 「嘉善大夫工曹參判月川趙先生神道碑銘」). 횡성조씨 족보류에서는 시조로 하고 趙瞻, 그 아들이 조의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계 기록에서 삼한공신에 책봉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0 오성, 앞의 논문(1981), 32~37쪽 참조.

한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했는가 하는 지점에는 의문이 든다.<sup>31</sup> 더구나 광종 9년(958)부터 관료로 등용되었다고 한다면 관료체계상으로도 하급관료에서 시작해야 했기에 정치세력으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이 시기 새롭게 등용된 인물들은 왕의 근신으로 광종을 보좌하며 점차 성장해 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에 서필이 주상에게 나아가 알현하여 말하기를, “원컨대 주상께서는 공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지 말고, 공이 있는 자를 잊지 마소서.”라고 하니 광종은 말없이 잠잠하였다. 다음 날 근신(近臣)을 보내 공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누구를 이르는지 물었다. 대답하기를, “공이 있는 자는 원보(元甫) 식회(式會)이고 공이 없는 자는 너희 무리들이니, 이를 주상께 아뢰어라.”라고 하였다. 당시 광종이 귀화한 한인(漢人)을 후대하여 신료의 집과 여식을 가려 주었다. 하루는 서필이 아뢰기를, “신이 사는 집이 조금 크니 주상께 바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광종이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금 귀화한 사람들은 관직을 가려서 사환하게 하고 집을 가려 거처하게 하는데, 세신으로 오래된 가문은 도리어 거처할 곳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은 자손을 위하여 계책을 낸 것이니, 재상이 거처하는 집은 재상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신이 살아 있을 때는 이러한 저의 뜻을 취하십시오. 신은 녹봉의 남은 것으로 다시 작은 집을 지어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광종이 노하였으나 끝내 깨달아 다시 신료의 집을 빼앗지 않았다.<sup>32</sup>

31 김우택은 광종의 과거제 도입이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규모 면에서 공신 세력에 대한 대체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우택, 앞의 논문(2021), 72쪽 참조.

32 『高麗史』列傳6 徐弼, “弼嘗進見曰 願上莫賞無功 無忘有功. 光宗嘿然. 翼日 遣近臣 問有功 無功者爲誰. 對曰 有功者 元甫式會是也 無功者 若輩是也 其以此奏. 時光宗厚待投化漢人 擇取臣僚第宅及女與之. 一日 弼奏曰 臣居第稍寬 願以獻焉. 光宗問其故 對曰 今投化人擇官而仕 擇屋

이 기록에서는 광종대 등용되었던 신진 세력으로서 근신(近臣)과 귀화 한인(漢人)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구신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재상 서필(徐弼)은 이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자신의 집을 왕에게 헌납하며 불만을 표출한다. 그의 지위로 미루어보면 기존의 관료 집단을 대표하여 광종에게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종은 이러한 서필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결국 서필을 위시한 기존 관료 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기록과 같이 광종이 아무 대가 없이 일반 관료의 집을 빼앗아 귀화 한인들에게 주는 행위가 실제로 가능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귀화 한인들에 대한 후대가 두터웠고 그에 대한 기존 관료들의 반발이 표면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필이 자신에게 왕명을 전하러 왔던 근신을 공이 없이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들로 규정했던 점이 주목된다.<sup>33</sup> 서필의 문제 제기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근신들이 건국과 체제 안정에 이바지했던 공신세력보다 우대받고 있으며 그것이 불법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근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쌍기가 귀화하자마자 한림학사라는 근시직을 받고 해당 직을 소유한 채로 지공거로서 새로운 관료들을 뽑았다는 점에서 쌍기와 같은 한인들 그리고 쌍기가 선발한 과거 급제자들 위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sup>34</sup>

그러나 서필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신진 세력에 대한 구신의 정치투쟁적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서필은 도를 넘어 친압하는 관료 지형에 문제를 제기

---

而處 世臣故家 反多失所. 臣愚誠爲子孫計. 宰相居第 非其有也 及臣之存 請取之. 臣以祿俸之餘 更營小第 庶無後悔. 光宗怒 然卒感悟 不復奪臣僚第宅”.

33 광종대 귀화 한인과 측근 세력에 대해서는 김두진, 앞의 논문(1979); 유병기, 앞의 논문(1984) 참고.

34 한림학사의 근신으로서의 성격은 周藤吉之, 「高麗初期の翰林院と誥院: 宋の翰林學士・知制誥との関連において」, 『高麗朝官僚制の研究』(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80) 참고.

했던 것으로 과거제와 같은 새로운 등용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도 도필(刀筆)로 관료에 진출했던 만큼 문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인물이었으며, 아들인 서희도 광종 11년(960) 쌍기의 문하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로 진출했던 점에서 서필 가는 문한적 소양을 갖춘 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서필은 새롭게 성장했던 문사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광종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당시의 상황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은 성종 원년(982) 최승로의 상서에서 등장한다. 최승로는 시무28조를 올리기에 앞서 선대왕의 정치 상황을 기술한 부분에서 광종대 치세에 대해 쌍기를 등용한 아래 문사를 우대하여 ‘재능이 없는 자[非才]’가 차제를 뛰어넘어 승진하여 경상(卿相)이 되었던 점과 그들을 연이어 인견하여 다른 정무를 게을리했던 점 그리고 남북옹인(南北庸人)들이 사은(私恩)을 통해 등용되어 후생(後生)들이 앞다투어 나아가 구덕(舊德)이 쇠퇴했던 점을 지적했다.<sup>36</sup>

최승로의 지적은 광종이 쌍기와 그가 등용했던 새로운 세력을 우대하여 즉근 세력을 구축했고 그로 인해 삼한공신을 비롯한 초기 중앙관료 집단과는 다른 남북(南北) 지역의 범범한 재주를 가진 인물들이 왕의 사적인 은혜로 등용되어 중앙관료로 몰려들었음을 말한 것이다. 최승로의 광종대 인식은 결국 능력이 없는 인물들이 사은을 통해 등용되는 비정상적인 시대라는 것 이었다. 그 스스로도 어린 나이에 경사를 통달하여 명성을 얻어 현달했지만 최승로가 비판했던 문사들은 그 결이 달랐다. 이들은 중국 출신 인물 혹은 신

---

35 『高麗史』列傳6 徐弼; 『高麗史』列傳7 徐熙。

36 『高麗史』列傳6 崔承老, “及雙冀見用以來 崇重文士 恩禮過豐。由是 非才濫進 不次驟遷 未浹歲時 便爲卿相。或連宵引見 或繼日延容 以此圖歡 惹於政事 軍國要務 堵塞不通 酒食譙遼 聯綿靡絕。於是 南北庸人競願依投 不論其有智有才 皆接以殊恩殊禮。所以後生爭進 舊德漸衰”。

진 세력들로 실제 관리로서의 능력보다 변론문과 같은 글 짓는 기술로 등용되어 관료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이제현이 광종대를 평가하며 쌍기에 의해 도입된 당시 과거제의 폐단을 말한 것이 주목된다. 이제현은 당시의 과거제도가 문장의 화려함만 평가하여 이후에 폐단이 지속되었다고 하면서, 서궁의 『고려도경』 내용을 인용했다. 서궁은 고려시대의 과거에 대해 시(詩), 부(賦), 론(論)이라는 3제(題)에 의해서만 시험하고 시정은 책문하지 않아 당대(唐代)의 폐단이 있음을 지적했다.<sup>37</sup> 이러한 후대의 인식과 당대인의 생각을 즉자적으로 연결지을 수 없지만, 유교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를 행했던 최승로의 생각과도 비슷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광종대 과거제를 통해 등용되었던 세력들이 비록 국가의 공식 제도를 통해 관료화되었을지라도, 국가를 건설하고 제도를 만들었던 공신들과는 다른, 능력이 없는 존재들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승진이 왕의 사은에 의해 우대받았던 것이기에 더욱 용납될 수 없었다.

또한 그가 지적했던 ‘옛날 덕 있는 자[舊德]’들이 쇠퇴했다는 것을 단순히 신진 세력의 등용을 반대한 구신들의 반발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유가에서 세신(世臣)은 척결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에서 우대받아야 할 존재였으며,<sup>38</sup> 공신들을 훌대하는 것은 군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승로 본인도 성종대 지공거를 역임한 인물로서 과거제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유교적인 소양과 글쓰기 방식

37 李齊賢, 『益齋集』, 「益齋亂藁」9下 史贊 光王.

38 세신의 보존은 『맹자』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맹자』가 경전의 반열에 오른 것이 남송대이기에 고려 초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송대 이미 소식이 해당 내용을 인용했고, 한대 『맹자』가 편집되어 보급된 이래로 비슷한 개념이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孟子集註』, 「梁惠王章句」,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王無親臣矣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

이 지배층 내부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광종의 과거제 도입은 그러한 분위기의 소산으로 고안되었고 관료 집단의 동의하에 시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세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들이 국초부터 활약했고,<sup>39</sup> 국초의 중앙관료가 출신 한언공(韓彦恭)은 광문원 서생으로서 과거 급제를 위해 노력했다.<sup>40</sup> 또한 서필 가와 같은 공신 출신 재상가에서도 과거제를 통해 관료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유학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배층 일반에 확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광종의 치세 전반기에는 새로운 관료들이 등용되어 광종의 지나친 우대를 받았고, 구신 세력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 사이 노비안검법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저의를 가졌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기존 관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구신 세력이 광종 정권에 대해 부정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대적인 권력 투쟁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 III. 광종 후반기 정국 동향과 경종대 개편

#### 1. 광종대 후반기 참소의 성행과 정치세력의 동향

광종 11년(960)이 되면 한 차례 정치적 참소(讒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국이 변화하게 된다.

<sup>39</sup> 국초부터 광종대의 유학 지식인에 관하여는 장일규, 「고려 광종대 유교적 정치이념과 崔行歸」, 『한국학논총』 34(2010), 555~563쪽 참고.

<sup>40</sup> 『高麗史』列傳6 韓彦恭.

평농서사(諱農書史)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죄승(佐丞) 왕동(王同) 등에 대해 역모를 꾀했다고 참소하여 그들을 편출시켰다. 이때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가 뜻을 얻어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였다. 또 종이 그 주인을, 자식이 그 아비를 참소하니, 옥이 늘 넘쳐 따로 임시 감옥을 두었다. 그리하여 죄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하는 자가 계속 이어져서 시기가 날로 심해져 종족 중에 몸을 보존하지 못한 자가 많았다. 비록 외아들 주(僕)라도 의심하여 왕래를 하지 않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감히 모여 이야기하지 못했다.<sup>41</sup>

평농서사 권신은 대상 준홍, 죄승 왕동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했고, 광종은 이들을 편출시켰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참소를 당한 인물들이 대체로 고관이었기에 구신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참소를 단순히 구신 세력에 대한 광종의 정치적 탄압으로 보기 어렵다. 이 기록은 참소 사건 발행 이후 참소가 횡행하게 된 사회 풍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훗날 경종이 되는 외아들 왕주(王僕) 조차 의심하고 멀리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탄압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물론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가 뜻을 얻었다.”는 문장에서 죄승로의 표현과 같이 ‘후생참적’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참소와 관련하여 어떤 인물이나 중심이 된 세력을 말해 주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당시의 정치 지형상으로도 쌍기가 등용되어 두 차례 과거를 주관하는 동안 약간의 인재를 등용했을 뿐, 이들을 중심으로 일군의 정치세력을 구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권신의 참소 직후 광종의 자세한 행보는 위낙 기록이 소략하여 알기 어렵

41 『高麗史』世家 光宗 11년(960) 3월, “諱農書史權信 謫大相俊弘 佐丞王同等謀逆 袂之。自是 讷  
佞得志 謗陷忠良。奴訴其主 子讒其父 圈圄常溢 別置假獄 無罪而被戮者相繼 猜忌日甚 宗族多  
不得保 雖一子僕 亦自疑阻 不使親近。人人畏懼 莫敢偶語”.

다. 광종 11년(960)에 순군부(徇軍部)의 명칭이 군부(軍部)로 변화하기는 하지만,<sup>42</sup> 당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선불리 추정할 만한 기록이 없다.<sup>43</sup> 다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는 시위군의 규모를 감하는 건의에서 “광종이 참소를 믿어 시위군을 늘렸다.”고 했던 것에서 결국 참소에 대한 광종의 의심과 경계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이러한 광종의 주변의 여러 세력에 대한 의심증으로 인해 추후 정치 지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신년(庚申年, 광종 11년)부터 을해년(乙亥年, 광종 26년)까지 16년간, 간홍들이 다투어 나아가 참소와 비방이 크게 일어나서, 군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인은 그 뜻을 얻어 마침내 자식이 부모를 거스르고 종이 주인을 문제삼는데 이르니 상하가 이심하고 군신이 해체되었습니다. 또 구신(舊臣)과 숙장(宿將)들은 서로 차례로 모두 주별되어 없어졌으며 그 친족들도 전부 멸족하였습니다. … 더구나 광종 말년이 되어서 세도가 어지러워지고 참소가 일어나 형율에 얹힌 자들은 죄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러 대의 훈신(勳臣)과 숙장(宿將)들

42 『高麗史』志30 百官1 兵曹.

43 이와 관련해서는, 광종 11년(960) 徇軍部가 軍部로 변화한 것이 순군부의 권한 약화를 의미한 것으로 보는 연구로 이기백, 「高麗京軍考」, 두계이병도박사화갑기념사업위원회(편),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서울: 일조각, 1956); 김두진, 앞의 논문(1979)이 있다. 반면 광종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조직을 확대했다고 보는 견해로는 정경현, 「高麗太祖代의 徇軍部에 대하여」, 『한국학보』 13(1987); 전경숙, 「高麗初의 徇軍部」, 『한국중세사연구』 12(2002) 등이 있으며, 순군부가 가진 선행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명칭이 변화했다는 견해를 제시한 권영국, 「고려 초 徇軍部의 설치와 기능의 변화」, 『한국사연구』 135(2006) 등도 있다.

44 선행연구에서는 이듬해인 광종 12년(961) 광종이 당숙인 王育의 집으로 이어하여 2년 뒤에 돌아오는 행보를 광종의 개혁정치에 대한 대호족 세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오성, 앞의 논문(1981), 36쪽; 김두진, 앞의 논문(1979), 70~71쪽. 그러나 이어의 목적이 궁궐 수리로 인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高麗史』世家 光宗 12년(961); 『高麗史節要』光宗 12년(961)], 이어한다고 해서 호족 세력에 내재된 비판이 줄어들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비판적인 호족 세력 중에서 반역을 도모했다면 사가에서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굳이 호족 세력을 염두에 두고 이어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모두 주별을 면치 못하고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경종께서 즉위하셔서는 구신 중에 남은 자가 40여 인뿐이었습니다. 그때도 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후생참적(後生讒賊)이라 진실로 애석하지는 않습니다.<sup>45</sup>

이 기록은 최승로가 바라본 광종 11년 이후 중앙 정치세력의 상황을 말해준다. 최승로는 경신년(광종 11년)부터 광종 말년까지의 시기를 참소와 비방이 난무하던 시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신과 숙장으로 대표되는 공신 세력들이 멸족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경종이 즉위할 때가 되면 조정에 남은 구신이 40여 인뿐이었다고 묘사했다. 조정 관료 규모에서 40여 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40여 인의 직위가 무엇인지, 정말 40여 인만 남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많은 구신 관료들이 참소로 인해 사망하거나 조정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 같다.<sup>46</sup>

그런데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광종대 기록이 모두 최승로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최승로는 태조대부터 활약했던 구신 가문 출신으로서 세태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롭게 등용되었던 후생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비판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구신 세력의 피해는 더 과장되게 표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신, 숙장이라는 존재들은 노성한 대신급 관원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국초부터 활약했던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경종 즉위 초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참소의 영향도 있었지만 고려 건국 이후 50여 년이 지나 이미 많은 관료가 노령으로 사망했던 탓도 있었을

45 『高麗史』列傳6 崔承老, “況自庚申 至乙亥 十六年間 犀兕競進 謂毀大興 君子無所容 小人得其志, 遂至子逆父母 奴論其主 上下離心 君臣解體. 舊臣宿將 相次誅夷 骨肉親姻 亦皆翦滅. …… 况屬光宗末年 世亂讒興 凡繫刑章 多是非辜 歷世勳臣宿將 皆未免誅鋤而盡. 及景宗踐祚 舊臣之存者 四十餘人耳. 其時亦有人遇害衆多 皆是後生讒賊 誠不足惜”.

46 이러한 경종대 초반 남은 40여 명의 구신과 숙장에 관해, 이기백은 그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기백, 앞의 논문(1974), 3쪽.

것이다.

더구나 전술했던 것처럼 광종 9년이 되어서야 과거제가 시행되었고 많은 수의 인물들이 등용되지 못했던 탓에, 기존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권력을 점 할 정도의 세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집단은 전체 관료 사회에서 소수의 입장이었고, 광종의 정치적 의심이 관료군 일반으로 향했을 때, 그 피해는 대부분 기존의 구신 세력이 입었을 것이다.

광종의 입장에서도 기반이 미약한 후생들만으로 친왕 세력을 구성할 수 없었을 것이고 구신 세력과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연대했을 것이다. 후생이라고 칭해지는 무리도 모두 광종의 측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승로가 말하는 후생들은 새로이 중앙관료로 선발된 존재들이었는데, 인용문의 기록처럼 후생 중에서도 참적(讒賊)이라고 하는 선한 관료들을 참소하는 존재들로 다시 분화되었던 것 같다.<sup>47</sup> 이처럼 다소 복잡한 당대 정치세력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승로가 말했던 광종 치세의 중요한 분기인 경신년(광종 11년) 이후 정치세력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구신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면, 광종 즉위 초 인물 중 박수경이 광종 15년(964)에 사망했다. 박수경은 아들 좌승(佐丞) 박승위(朴承位), 박승경(朴承景), 대상(大相) 박승례(朴承禮)가 참소를 받고 하옥되자 근심스럽고 분해하다 사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박수경 가의 피해는 대표적인 광종의 호족 세력 탄압으로 꼽히지만, 최승로가 언급한 것처럼 멸문의 화를 당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참소 때문에 투옥되었을 뿐 멸문에 이를 만큼 강도 높은 탄압을

---

47 김당택은 후생참작에 관해 후생 중에서도 공신과 그들의 사병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시위군 계통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라 했다. 김당택, 앞의 논문(1989), 56~61쪽; 김당택,『고려 양반국가의 성립과 전개』(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0), 31~39쪽. 한편 전기웅은 이들을 광종대 전제왕권에 영합하여 호족 세력 숙청에 관여한 존재로 보았다. 전기웅, 앞의 논문(1985), 153~154쪽.

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박수경의 자식 대 행보는 장자 박승위계에서 확인되는데, 박승위는 사도(司徒)를 최종 관력으로 했다.<sup>48</sup> 사도직은 후손의 현달로 추증된 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아들 박복종도 소부감(少府監)에 그쳤던 점에서 그가 정계로 복귀하여 스스로 현달하여 삼공의 지위에 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9</sup> 즉, 박수경 가는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최승로의 언급처럼 ‘친족들이 멸족’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종 16년(965)에는 또 다른 재상 내의령(內議令) 서필이 사망했다.<sup>50</sup> 그런데 서필 가의 행보는 박수경 가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필은 신진들에 대한 그의 비판을 광종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광종에게 우대받은 공신이었던 것으로 보이며,<sup>51</sup> 광종의 배향공신이었다는 점에서 광종대 어떠한 공세를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즉, 서필은 공신으로서 관로에 진출하여 비교적 무탈하게 재상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아들 서희 역시도 고관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는 광종 11년(960) 쌍기 가 주관하는 과거에서 급제했고 이후 차례를 뛰어넘어 광평원외랑(廣評員外郎)에 초수(超授)되었다.<sup>52</sup> 그리고 광종 23년(972)에는 내의시랑(內議侍郎)으로 송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아 보통의 승진 경로를 뛰어넘어 경상의 지위로 올라섰던 것 같다.<sup>53</sup> 이러한 모습은 최승로가 비판했던 차례를 뛰어넘어 경상에 지위에 이른 후생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서희는 귀화 한

48 「박경산 묘지명」; 김용선(편), 앞의 책(2021).

49 「박경인 묘지명」; 위의 책.

50 『高麗史』世家 光宗 16년(965) 7월.

51 오성, 앞의 논문(1981), 40~41쪽; 김당택, 앞의 논문(1981), 50쪽 참조.

52 『高麗史』列傳7 徐熙, “徐熙 小字廉允 內議令弼子也。性嚴恪。光宗十一年 年十八擢甲科 超授 廣評員外郎 累遷內議侍郎”。

53 『高麗史』世家 光宗 23년(972).

인과 근신들을 비판했던 서필의 자식이었기에, 신진관료라고 하더라도 구신으로서의 성격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최승로의 비판 대상이었던, 귀화 한인과 후생들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쌍기는 광종 12년(961) 세 번째 지공거를 끝으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sup>54</sup> 그의 열전에는 과거 도입과 부친 쌍철도 귀화했다는 내용 이외에 나머지 기록은 사서에 남아 있지 않다고 전한다. 그가 고관으로 성장했다면 기록에 전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광종대 지공거는 쌍기·왕용의 사례처럼 한림학사로서 연속하여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던 것 같다. 쌍기가 담당했던 지공거 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에 관한 기록이 사라졌던 것에서 이 무렵에 이미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쌍기가 어떻게 실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참소에 휘말려 실각했을 가능성 있다. 비록 최승로가 광종 11년(960) 이후 참소 분위기 속에서 훈신과 숙장들이 사라졌다고 했지만, 광종의 측근 세력을 구성했던 귀화 한인이나 유학파 관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월국에서 유학했던 최행귀(崔行歸)는 귀국후 광종의 측근이 되었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연좌되어 죽었다.<sup>55</sup> 쌍기도 광종의 측근으로서 참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관료들을 향한 광종의 태도는 상당히 고압적이어서 관료들을 쉽게 펨출했다. 광종 21년(970) 최지몽은 광종과 함께 귀법사에 행차했는데 술에 취해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11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sup>56</sup> 최지몽이 범한 실례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참소에 비하면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 사건에도 오래도록 펨출시켰던 것을 보면 광종이

54 『高麗史』志27 選舉1.

55 『高麗史』列傳5 崔行歸.

56 『高麗史』列傳5 崔知夢.

관료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sup>57</sup> 쌍기도 사소한 문제에 연루되어 중앙 정계에서 멀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어쨌든 쌍기의 역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4회 과거부터 새로운 인물들이 과거를 주관하기 시작한다.

광종은 쌍기를 대신하여 한림학사 조익(趙翌)을 지공거로 임명하여 과거를 실시했고, 이후 재위 17년부터 한림학사 왕용을 지공거로 삼아 치세 내내 과거를 주관하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왕용은 중국 남방에서 유학했으며 광종 초년부터 고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광종 초년부터 고관이었다는 것은 결국 이전 시기부터 고려 조정에서 관료로 활동했던 구신 세력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문한 능력이 있는 구신을 기용하면서 정국 운영에 변화를 주었다.<sup>58</sup>

귀화 한인의 대표적 인물인 쌍기가 기록에서 사라져 갔고 오월에서 유학했던 최행귀도 정치적으로 탄압받았으며 구신 관료들이 중용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한편에서 한인들의 귀화와 그들에 대한 광종의 우대는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다. 광종 21년 송(宋) 천주(泉州) 사람 채인범(蔡仁範)이 서장관으로 고려에 왔다가 귀화했다. 광종은 집과 전장, 노비와 안마(鞍馬) 등을 내리고 관료로 임명했다. 이후 그는 경사에 통달하고 문장을 잘 지어 국왕의

57 김용선은 이 사건에 관해 최지몽이 훈신숙장 계열의 인물로 귀법사를 통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광종의 시도를 반대하여 실각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용선, 「光宗의 改革과 歸法寺」, 이기백(편), 『高麗光宗研究』(서울: 일조각, 1989), 100쪽. 그러나 최지몽의 유배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 술에 취해 저지른 실례 그 자체의 문제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종이 즉위 직후 훈신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후생들 중 참소를 일삼은 존재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종 5년이 되어서야 중앙정계에 복귀했다. 당시 정계에 복귀하게 된 과정도 경종 5년 일어났던 왕승의 난을 예견하여 이를 경종에게 미리 알렸던 것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58 강희옹은 광종 15년부터 지공거가 문신인 조익, 그리고 훈신족별 출신의 왕용으로 바뀌었던 것을 그간 소외되었던 '歷世勳臣'에 대한 회유책으로 보았다. 강희옹, 앞의 논문(1973), 271~272쪽.

인정을 받으며 관료 생활을 이어 갔다고 전한다.<sup>59</sup>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지만, 광종 말년까지도 한인들이 귀화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우해주었다는 점에서 광종의 새로운 인재 등용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제를 통한 신진 세력의 진입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발 규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성종대 주축으로 활약했던 관료들은 대부분 광종 후반대 과거급제자들이었다. 이들은 후생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참적으로 활약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경종 즉위 초 후생참적들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졌을 때 화를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종 재위 연간의 과거제 시행과 후생들의 관료 진출은 유교 소양을 갖춘 인재의 등용을 국가가 제도로 인정했다는 점과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후대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요컨대 광종 재위 11년 이후의 정국은 참소의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광종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왕권에 편승하여 참소를 일삼는 세력이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주로 근신으로 활약하던 신진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일반 관료와 근신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고, 서필 가나 왕용의 사례처럼 세를 유지하고 관료 생활을 영위했던 구신 관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광종은 귀화 한인들을 우대했으며, 한편에서는 과거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료층이 유입되고 있었다.

---

<sup>59</sup> 「채인범 묘지명」; 김용선(편), 앞의 책(2021).

## 2. 경종대 정국 개편과 정치세력의 동향

광종 재위 후반의 불안한 정국은 경종이 즉위하고 나서 ‘후생참적’들을 탄압하면서 유지되는 듯했다. 최승로는 경종 즉위 직후 참소당한 관료의 자손들이 복수하는 것을 허락했고 억울한 희생자도 있었지만 후생참적들이 제거되었다고 말했다.<sup>60</sup> 다만 후생참적은 신진 세력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후생 내에서 참소를 일삼는 존재들을 이르는 것으로, 그들은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탓에 경종이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실각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참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후생들은 구신 세력과 함께 관료 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경종은 광종 사망 직후부터 정국을 재편하기 위해 노력했다. 광종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대사면령을 내려 유배 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광종대 중치했던 가옥(假獄)을 헐고 참소하는 문서를 불살랐다.<sup>61</sup> 이는 광종대의 참소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의도였다. 또한 광종대의 폐단을 참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겼기에, 참소를 일삼던 후생참적들을 제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태자 시절 본인도 광종에게서 의심받았던 경험 때문에 경종은 참소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참소하는 무리를 제거함으로써 정국을 개편하는 한편 경주 세력과 혼인을 통해 정치적 후원 세력을 마련하고자 했다. 경종 즉위년 10월 경순왕(敬順王) 김부(金傅)의 여식과 혼인하고 김부를 상보(尙父)로 높이면서 우대했다.<sup>62</sup> 이는 황주황보씨(黃州皇甫氏), 정주유씨(貞州柳氏), 충주유씨(忠州柳

60 『高麗史』列傳6 崔承老.

61 『高麗史』世家 景宗.

62 『高麗史』世家 景宗 即位년(975) 10월.

氏)와 같은 기존의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력들과는 다른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sup>63</sup> 동시에 원년의 관제 개편 및 인사는 경종의 정국 운영 기조를 잘 보여준다.

경종은 즉위 초 집정(執政)이라는 관제를 두고 왕선(王讞)을 임명하여 정국 운영을 주도하게 했다.<sup>64</sup> 당시 참소에 대한 보복이 허락되었던 시기였는데, 왕선은 경종 정권의 최상층부 관료로서 이를 주도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실 인물인 천안부원낭군(天安府院郎君)를 살해하게 되고, 경종은 왕선의 정치 천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왕선을 편출시키고 복수를 금지했으며 그의 직위였던 집정을 좌·우집정(左·右執政)으로 분리함으로써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했다.<sup>65</sup> 경종 본인이 생각했던 참적의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종실 인물이 사망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광종 치세의 정국과 다름없는 것이었기에 신속한 결단을 내리고 제도를 개선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좌·우집정에는 각각 순질(荀質)과 신질(申質)을 임명했다. 신질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순질은 광종 초년에 이미 광평시랑이라는 고위직을 역임했던 인물로 확인된다. 즉, 그 역시도 태조대부터 관료로 활약했으며, 왕선과 같이 과격한 세력이 아닌 온건한 구신으로서 왕권을 보좌할 인물이었다.<sup>66</sup> 순질과 신질은 좌·우집정 직을 맡으면서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내

63 물론 경종의 2비 이하는 충주황보씨, 황주황보씨 계열이지만 왕실 부마였던 김부의 여식과 혼인했던 점과 혼인 직후 김부를 상보로 높였던 점은 이례적인 모습이 분명하다. 이태진, 「金致陽 亂의 性格」, 『한국사연구』 17(1977), 88쪽 참조.

64 집정이라는 관제는 송 제도를 본떠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광종대부터 송파의 통교를 행했다는 점에서 집정이라는 제도를 인지하고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용필, 「高麗 景宗初「復讐」許容의 思想의 基底」, 『한국사상사학』 11(1998), 140~142쪽 참조.

65 이태진, 「高麗 宰府의 成立: 그 制度史的 考察」, 『역사학보』 56(1972), 17쪽 참조.

66 이기백, 앞의 논문(1974), 3쪽 참조.

의령(內議令) 직을 겸했는데 이는 정사에 전임했던 1인 집정체제에서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권을 보좌하는 존재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up>67</sup>

한편 광종의 근신들 중에서도 참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신진관료들도 여전히 경종대 관료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은 재위 원년(976) 원보(元甫) 수여(壽餘)를 근신인 지어주사(知御廚事)로 임명했는데, 수여는 그 이름과 생몰연대 그리고 담당직으로 비추어볼 때 위수여(韋壽餘)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그는 광종대부터 사선(司膳)을 역임했던 점에서 광종의 근신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승진하지 못하다가 목종대가 되어야 현달했다고 전한다. 아울러 그는 인물평에 “단정하고 훌륭하며 법도를 잘 지켰다[端懿守法].”라고 전하는 만큼,<sup>68</sup> 왕의 근시에서 머물며 참소를 일삼는 무리와는 결을 달리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광종대 내승지(內承旨)를 역임했던 한언공(韓彦恭), 유진(劉瑨)도 확인되는데,<sup>69</sup> 이들의 관직이 왕명 출납과 관계되기에 국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점에서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아마 이러한 내승지와 같은 인물들 중에서 참소를 일삼는 무리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언공과 유진은 그러한 후생참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인물들이었던 것 같다. 이들이 경종대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는지 기록에 전하지 않지만, 경종 초 후생참직들이 일소되었던 시기에도 화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종대에도 중앙관료로서 살아남아 후대에 활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종은 단순히 구신 세력에 대한 대립향으로 광종대 신진 세력을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관료제를 개편하고 광종대의 참소 분위기를 일

67 이태진, 앞의 논문(1972), 18쪽; 전기웅, 앞의 논문(1985), 41쪽 참조.

68 『高麗史』列傳7 韋壽餘.

69 『高麗史』列傳6 韓彦恭; 『高麗史』列傳7 劉瑨.

신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전시과의 설행, 훈전의 지급을 동시에 행하면서 일반 관료 집단과 공신 집단 모두를 우대함으로써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한편 즉위 초년에 후생참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후생 관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과거제를 유지하며 신진 관료의 등용 의지를 보였다.<sup>70</sup> 지공거의 소임도 광종대 해당 직을 담당했던 왕융이 맡았다. 그의 개인적인 문한 능력뿐만 아니라 광종대 여러 차례 주관했던 지공거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광종대 행했던 제도와 활약했던 인사 중에서 취할 만한 제도와 인물은 적절히 취하고자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광종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중국계 인물 혹은 중국 유학파 인물들이 여전히 관료로 활약했고,<sup>71</sup> 중국으로의 학생 파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종 원년 김행성(金行成)을 송에 보내 국자감에 입학시켰다. 그의 가계에 관해 알 수 없기에 그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선진 문물과 학문을 익히고 돌아와 고려에 보탬이 되도록 했던 것 같다.<sup>72</sup>

---

70 경종대 과거는 친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왕과 급제자 간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광종대 근시기구에서 활약했던 신진 관료와 국왕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종도 그러한 근시기구의 강화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기에 단정할 수 없다. 더불어 과거제를 통해 신진 관료들의 유입을 유지해 갔다는 측면에서 성종대로 이어지는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것이 주목된다.

71 경종대 연대기 자료의 기록이 위낙 소략하여 중국계 관료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던 채인범은 광종 말엽에 고려로 귀화하여 목종대까지 관료로 활약했다. 경종의 재위 기간이 짧은 탓인지 그의 묘지명에서도 경종대 뚜렷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큰 부침 없이 관료 활동을 이어 갔던 점에서 경종대도 역시 관료로 재직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채인범 묘지명」; 김용선(편), 앞의 책.

72 김행성은 이후 진사제에 급제하여 송나라 관료가 되었는데, 성종은 김행성을 불러오고자 했으나 그가 거부했다고 전한다. 『宋史』 권487 列傳246 外國3 高麗: 전기웅, 앞의 논문 (1985), 42쪽에서 재인용. 그가 비록 스스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지만, 고려인으로서 중국 조정에서 활약하던 관료를 돌아오도록 요구했기에 유학생 파견의 목적이 유학 소양을 갖춘 관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종의 정국 운영은 참소를 받아 중앙정계에서 멀어졌던 세력들을 중앙정계로 복귀시키면서 관료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과 유대하기도 하고 전시과 설행이나 관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국정 운영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는 한편 광종대 실시했던 과거제를 유지하고 중국계 인물들을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경종 정권은 그가 재위 6년 만에 사망함으로써 막을 내리지만, 광종대 중용되었던 고시관 왕융을 정치적으로 도태시키지 않고 기용하여 과거제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IV. 맷음말

---

이 논문은 광종·경종대 정치세력과 정국의 동향에 대해 당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존 연구에서 당대 정치세력과 정국 운영이 광종의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구신 세력과 신진 세력들을 대립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 정치세력과 정국의 동향을 재검토했고, 그 결과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고려 초의 삼한공신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책봉되었고, 그에 따라 삼한공신이라는 이유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특히 고려 초 중앙관료를 구성했던 광범한 3등 공신들은 2,000명이나 되었고 그 성격도 다양했다. 또한 혜종, 정종, 광종을 거치면서 권력 투쟁 과정에서 많은 공신 세력들이 제거되었으며, 광종 즉위 시에는 건국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이라 노령으로 사망한 인물들도 다수 확인된다. 그 덕분에 광종 치세 초반은 공신 세력의 압박이 비교적 느슨해져 안정적인 정국이 유지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광종 7년(956) 쌍기가 귀화한 이후 한인(漢人)과 근신에 대한 과도

한 친압이 나타나면서, 구신 세력들의 반발이 일어난다. 다만 이러한 반발은 신진 세력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정 관료에 대한 과도한 은혜, 즉 왕의 사은(私恩)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후 광종 11년(970)이 되면 광종의 정국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 계기는 대상 준홍, 좌승 왕동에 대한 평농서사 권신의 참소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광종은 참소를 믿어 재위 말년까지 일반 관료와 근신을 가리지 않고 많은 관료들을 죽이거나 펌출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한인의 유입과 과거제 시행이 이어지면서, 유학적 소양을 갖춘 관료들이 우대받고 그들을 등용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자리 잡게 된다.

광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경종은 선왕대 참소의 분위기를 일소하고자 후생참적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정국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참소에 대한 보복을 허락하면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집정(執政) 직의 개편을 통해 온건한 개혁을 표방했고, 구신 세력뿐만 아니라 광종에 의해 등용되었던 후생들 중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기도 했다. 또한 광종대 지공거로 오래 활약했던 왕용을 기용하여 과거제를 시행했으며, 중국으로의 유학생 파견도 지속했다. 경종의 정국 운영은 단순히 광종대 정국 운영의 반동이 아니라, 선왕대 훌륭한 제도들을 유지하며 구신 세력과 신진 세력의 조화를 추구했다. 비록 경종은 요절했지만 광종대부터 이어온 유학 소양을 갖춘 인재 등용 정책은 성종대로 이어지며 관료제를 완성되는 데 이바지했다.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遺事』.

李齊賢, 『益齋集』.

趙穆, 『月川集』.

崔滋, 『補闕集』.

『冊府元龜』(中國基本古籍庫).

『孟子集註』.

「박경인 묘지명」, 「박경산 묘지명」, 「박소 묘지명」, 「채인범 묘지명」.

### 2. 논자

강형석, 「고려 전기 공신당의 설치와 운영: 벽상공신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67, 2021, 151~186쪽.

강화웅, 「高麗初 科舉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한국연구실(편), 『韓國의 傳統과 變遷』,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권영국, 「고려 초 徒軍部의 설치와 기능의 변화」, 『한국사연구』 135, 2006, 115~140쪽.

김갑동,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김갑동,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왕권의 확립과정과 호족」, 『한국사』 12, 서울: 탐구당, 2003.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서울: 일지사, 2005.

김갑동, 「高麗太祖 初期의 中央官府와 支配勢力: 太祖 元年 6月 辛酉 詔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학회(편), 『고려 중앙정치제도사의 신연구』, 서울: 해안, 2009.

김광수,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사학지』 7, 1973, 35~72쪽.

김당택,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 田柴科」, 이기백(편), 『高麗光宗研究』, 서울: 일조각, 1989.

김당택, 『고려 양반국가의 성립과 전개』,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0.

김두진,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한국학보』 15, 1979, 43~80쪽.

- 김용선, 「光宗의 改革과 歸法寺」, 이기백(편), 『高麗光宗研究』, 서울: 일조각, 1989.
- 김용선(편),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2021.
- 김우택, 「10~12세기 高麗 選舉制의 운영 원리와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일우, 『고려 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계 연구』, 서울: 일지사, 1998.
- 노용필, 「高麗 景宗初「復讐」許容의 思想的 基底」, 『한국사상사학』 11, 1998, 137~151쪽.
- 노용필, 「高麗 景宗初 改革政治와 그 推進勢力」, 『진단학보』 91, 2001, 29~52쪽.
- 박은경, 『고려시대향촌사회연구』, 서울: 일조각, 1996.
- 박천식, 「三韓壁上功臣의 研究 I (壁上功臣의 形成과 太祖政權의 一斷面)」, 『전라문화논총』 2, 1988, 165~238쪽.
- 백남혁, 「高麗 光宗代 改革政治의 基盤과 成果」, 『실학사상연구』 23, 2002, 5~37쪽.
- 오성, 「高麗 光宗代의 科舉入格者」, 이기백(편), 『高麗光宗研究』, 서울: 일조각, 1989.
- 유병기, 「高麗初 豪族의 動向과 王權強化策: 光宗의 王權強化策을 中心으로」, 『전주사학』 1, 1984, 41~65쪽.
- 윤성재, 「高麗 光宗의 政治基盤」, 『한국사학보』 13, 2002, 135~160쪽.
- 음선혁, 「高麗太祖王建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기동,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中世의 側近政治의 志向」, 『역사학보』 77, 1978, 17~65쪽.
- 이기백, 「高麗京軍考」, 두계이병도박사화갑기념사업위원회(편),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서울: 일조각, 1956.
- 이기백, 「新羅統一期 및 高麗初期의 儒教의 政治理念」, 『대동문화연구』 6·7, 1969, 141~13쪽.
- 이기백, 「高麗 成宗代의 政治的 支配勢力: 慶州·羅州 地方 출신의 儒學者들과 近畿 地方 출신의 豪族系 官僚들」, 『호남문화연구』 6, 1974, 1~19쪽.
- 이태진, 「高麗 宰府의 成立: 그 制度史의 考察」, 『역사학보』 56, 1972, 1~43쪽.
- 이태진, 「金致陽 亂의 性格」, 『한국사연구』 17, 1977, 61~113쪽.
- 장일규, 「고려 광종대 유교적 정치이념과 崔行歸」, 『한국학논총』 34, 2010, 551~581쪽.
- 전경숙, 「高麗初의 徇軍部」, 『한국중세사연구』 12, 2002, 5~39쪽.
- 전기웅, 「高麗 景宗代 政治構造와 始定田柴科의 성립기반」, 『진단학보』 59, 1985a, 29~59쪽.
- 전기웅, 「高麗 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譏賊」」, 『부대사학』 9, 1985b, 139~159쪽.
- 정경현, 「高麗太祖代의 徇軍部에 대하여」, 『한국학보』 13, 1987, 45~68쪽.

- 플라센 라헬, 「10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과거제도의 시행」, 『한국사론』 67, 2021, 1~50쪽.
- 하현강, 『韓國中世史研究』, 서울: 일조각, 1988.
- 周藤吉之, 「高麗初期の翰林院と誥院-宋の翰林學士・知制誥との関連おいて」, 『高麗朝官僚制の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80.
- 周藤吉之, 「高麗初期の功臣, 特に三韓功臣の創設: 唐末・五代・宋初の功臣との関連において」, 『東洋學報』 66-1~4, 1985.

## 국문초록

고려 건국의 공훈을 세운 삼한공신 세력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책봉되었기 때문에 당시 고려의 정치 구조는 삼한공신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또한 그들은 고려 초 왕위 계승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노령으로 사망함으로써 광종의 즉위 시점이 되면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러한 정치 지형을 바탕으로 광종은 여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고, 쌍기(雙冀)와 같은 한인(漢人)을 등용하고 과거제를 통해 새로운 인재들을 중앙관료로 진입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나치게 우대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곧 구신 세력과 신진 세력의 대립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광종 11년(970)에는 광종 치세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권신(權信)의 참소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후부터 광종은 참소를 믿어 많은 관료들을 죽이거나 폄출시켰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신 세력이 관료제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학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등용하고자 했던 기조도 변하지 않았다.

경종은 선왕대의 참소 분위기를 일소하고자 집정제의 도입과 개편 그리고 전시파의 실행 등 제도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광종대 능력 있는 인사들을 배척하지 않고 등용했으며, 유교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관료로 등용하고자 하는 선왕의 기조를 이어 갔다. 그러한 기조는 후왕인 성종대로 이어지며 고려 관료제 정비에 이바지했다.

투고일 2024. 9. 10.

심사일 2024. 10. 28.

제재 확정일 2024. 11. 19.

주제어(keywords) 광종(Gwangjong), 경종(Gyeongjong), 삼한공신(Samhan meritorious subject), 희생(Husaeng), 최승로(Choi Seungro), 과거제(civil service examination)

## Abstract

### The Political Forces and Operations of King Gwangjong and Gyeongjong Periods of Koryō

**Kim, Wonhyeok**

The Samhan Meritorious Subjects, who contributed to the founding of Koryō, were bestowed their titles across a wide range of individuals, thereby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exercise power solely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ir influence weakened throughout the early succession struggles of the Koryō dynasty, particularly by the time of Gwangjong's enthronement due to factors such as political strife and aging.

Building on this shifting political topography, Gwangjong implemented various reforms,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Han Chinese (漢人) such as Ssang Gi (雙冀)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hich allowed new talents to enter the central bureaucracy. However, the excessive favoritism toward these newly appointed officials became problematic. The accusation from Gwon Shin (權信) in the 11th year of Gwangjong's reign (970) marked a turning point, ultimately leading Gwangjong to trust false accusations and resulting in the execution or exile of many officials. Nonetheless, his fundamental policy of appointing individuals with Confucian qualifications was maintained.

To eliminate the accusatory atmosphere of his predecessor's reign, King Gyeongjong focused on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Jipjung (執政) and the Jeonsigwa (田柴科). At the same time, he maintained the policy of appointing capable individuals from Gwangjong's era, thus continuing to cultivate and appoint officials with a foundation in Confucianism. This policy persisted into the reign of King Seongjong, thereby contributing to the further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the Koryō bureaucratic system.